

7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 다음은 우리 기장군이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71,908	21,816	28,611	56,761	57,169	3,451	2,861	0	1,239
국 비	97,314	19,399	15,108	29,407	31,090	2,310	0	0	0
시 비	45,777	1,768	9,043	19,449	14,050	749	718	0	0
군 비	28,817	649	4,460	7,905	12,029	392	2,143	0	1,23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345,124	469,707	411,201	424,547	439,473
사회복지분야(B)	113,865	128,703	143,060	162,594	171,908
사회복지분야비율(B/A)	32.99	27.4	34.79	38.3	39.12
인구수 (C)	144,748	153,093	158,527	161,651	164,86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787	841	902	1,006	1,04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어린이집 안전 및 환경관련 사업 신설, 2018년 10월 기초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지원 대상자 증가, 복지대상 인구수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사회복지비가 증가하였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기장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92,744	33,902	6.88	
민간경상보조 (307-02)		10,975	2.23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594	0.12	
민간행사보조 (307-04)		1,725	0.3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3,107	2.66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5,686	1.15	
민간자본보조 (402-01)		1,815	0.37	

-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45,124	469,707	411,201	424,547	492,744
지방보조금(민간)	37,665	32,082	32,350	32,146	33,902
비율	10.91	6.83	7.87	7.57	6.88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참조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기장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총 사업수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229개 사업				별지 참조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2018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 별지참조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기장군 해양수산과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주소	변동내역
			별	지	참	조			

◎ 2018년도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변동현황 : 별지참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장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금액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차성아트홀 상설공연 지원	극단 가마골	130	극단 관련자 위법사항에 따른 보조사업 추진 불가	'18.2.22	교부결정 취소
어린이극단 신바람 운영지원	극단 가마골	20	극단 관련자 위법사항에 따른 보조사업 추진 불가	'18.2.22	교부결정 취소

7-6. 행사·축제경비

☐ 다음은 우리 기장군이 2018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39,473	2,713	0.62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45,124	469,707	411,201	424,547	439,473
행사·축제경비	300	1,192	655	825	2,713
비율	0.09	0.25	0.16	0.19	0.62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장군은 편성기준에 의거하여 행사·축제 경비를 편성 및 집행하고 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